
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(조은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28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13.

발 의 자 : 조은희 · 신성범 · 이인선
서천호 · 이성권 · 김용태
윤상현 · 박정하 · 김소희
조지연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방송법」은 국민적 관심이 큰 스포츠 행사 등을 국민이 원활하게 시청할 수 있는 권리인 보편적 시청권을 인정하고 있으며,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계권 협상 시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또는 지연을 금지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, 현재 올림픽,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스포츠 행사의 중계권이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에 독점되어 가입자가 아닌 국민의 시청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이 참여하는 보편적 시청권 보장 협의체의 구성·운영을 통하여 보편적 시청권의 사각지대를 사업자 자율로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, 중계권 협상 관련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액수를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(안 제76조의3

제4항 및 제76조의6 신설).
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6조의3제4항 중 “해당 중계방송권의 총계약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”을 “다음 각 호의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1항제1호·제2호 및 제4호의 금지행위에 대한 시정조치: 해당 중계방송권의 총계약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
2. 제1항제3호의 금지행위에 대한 시정조치: 해당 중계방송권의 총계약금액에 100분의 10를 곱한 금액 또는 5억원

제76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6조의6(보편적 시청권 보장 협의체의 구성·운영)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보의 공유 및 협력체계의 강화를 위하여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이 참여하는 보편적 시청권 보장 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보편적 시청권 보장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보편적 시청권 보장에 관한 적용례) 제76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국민관심행사등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6조의3(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<u>해당 중계방송권의 총계약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⑤ · ⑥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76조의3(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다음 각 호의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<u>1. 제1항제1호 · 제2호 및 제4호의 금지행위에 대한 시정조치: 해당 중계방송권의 총계약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</u></p> <p><u>2. 제1항제3호의 금지행위에 대한 시정조치: 해당 중계방송권의 총계약금액에 100분의 10를 곱한 금액 또는 5억원</u></p> <p>⑤ ·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76조의6(보편적 시청권 보장</u></p>

협의체의 구성·운영) ① 방송
미디어통신위원회는 보편적 시
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보의
공유 및 협력체계의 강화를 위
하여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
권자등이 참여하는 보편적 시
청권 보장 협의체를 구성·운
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보편적 시청
권 보장 협의체의 구성 및 운
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
으로 정한다.